

동아에스티주식회사 정관

2013.03.04 제정
2014.03.21 개정
2018.03.27 개정
2019.03.29 개정
2021.03.24 개정
2022.03.28 개정
2023.03.28 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상호) 이 회사는 동아에스티주식회사(영문 Dong-A ST Co.,Ltd.)라 한다.

제 2 조(목적)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의약품, 의약부외품, 화공약품, 수의약품, 농예약품, 생물학적 의약품 등의 제조, 수출 및 판매업
2. 의약품소분업
3. 연구, 개발 및 기술개발과 기술정보 등의 제공업 및 관련 용역 수탁업
4. 한약재 수출입 및 판매업
5. 의료기기, 위생용품의 제조, 수입, 임대, 수리 및 판매업
6. 식료품, 식품첨가물, 인삼제품의 제조 및 매매업
7. 화장품, 세제, 세정제, 비누, 도료, 플라스틱제품의 제조 및 매매업
8. 효소의 제조 및 매매업
9.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
10. 수입품의 판매 및 위탁업
11. 부동산 개발, 매매 및 임대업
12. 전산용역 및 임대업
13. 조림, 육림 및 약초재배업(앵속제외)
14. 창고업 및 자동차 운수사업
15. 기계·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 및 매매업
16. 의약품가공수탁, 제조시설 및 기구임대업
17. 교육 서비스업
18. 금형 및 기타장치 제조 및 매매업
19. Engineering 용역업
20. 주류 수출입 중개업
21. 통신판매업
22. 자가측정 대행업
23.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
24. 단미사료제조업
25. 주택의 건설, 공급, 판매 및 그 시공업
26. 조립식 주택사업
27. 임대주택 건설 및 임대업
28. 아파트형 공장건설, 분양 및 임대업
29. 택지, 공장부지 조성 및 공급업
30. 상가, 업무용 시설의 건설, 공급, 판매 및 그 시공업
31. 식품의 유통전문판매업

- 32. 인터넷 관련 전자상거래 사업
- 33.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,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
<본호 신설 2019.03.29>
- 34. 시장조사, 경영자문, 경영관리대행 및 컨설팅업 <본호 신설 2019.03.29>
- 35. 전 각호와 관련한 일체의 부대사업 및 투자 <본호 개정 2019.03.29>

제 3 조(소재지)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.

②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분공장과 지점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.

제 4 조(공고방법) ①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 인터넷홈페이지(<http://www.donga-st.com>)에 게재 한다. <본항 개정 2014.03.21>

②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의 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.

제 2 장 주 식

제 5 조(발행예정주식의 총수)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천만주로 한다.

제 6 조(일주의 금액)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(주식의 종류)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.

- 제 7 조의 2(우선주식의 수와 내용)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으로 하며, 그 발행주식의 수는 삼백만주로 한다.
-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%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.
-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.
-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.
-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.
-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
-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. 그러나 이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. <본항 개정 2021.03.24>

제 7 조의 3(상환주식) ① 회사는 제 7 조의 2에 따른 우선주식을 이사회의 결의로 또는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.

- ②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제 7 조의 2 제 7 항에 정한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.
- ③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액면가액, 발행가액,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에서 상환주식의 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가 정한다.
- ④ 상환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, 회사가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- ⑤ 회사는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은 날 또는 상환을 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고 주주에게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지급한다.

제 7 조의 4(전환주식) ① 회사는 제 7 조의 2 에 따른 우선주식을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.

- ② 전환주식의 전환비율은 우선주식 1 주를 보통주식 1 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.
- ③ 전환청구 기간은 제 7 조의 2 제 7 항에 정한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④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.
- ⑤ (삭제) <2021.03.24>

제 7 조의 5(상환전환주식) ① 회사는 제 7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전환주식인 동시에 상환주식인 것으로 정할 수 있다.

- ② 전환 및 상환에 관한 내용은 제 7 조의 3 제 2 항 내지 제 5 항 및 제 7 조의 4 제 2 항 내지 제 4 항을 준용한다. <본항 개정 2021.03.24>

제 8 조(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실물로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<본조 개정 2019.03.29>

제 9 조(신주인수권)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-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주주의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
 1.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2.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3.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, 기관투자자, 또는 외국인투자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4.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·판매·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5. 주식예탁증서(DR)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- 6.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등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

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<본항 개정 2023.03.28>

- ③ 제 2 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
제 9 조의 2(주식매수선택권) ① 이 회사는 임·직원(상법 시행령 제 9 조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·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의 범위내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.

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·경영·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.

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)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.

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·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·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,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.

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.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

가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

나. 해당주식의 권리액

2.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

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.

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⑧ (삭제) <2021.03.24>

⑨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·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

2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·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

3.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

4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 9 조의 3(우리사주매수선택권) ① 이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(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우리사주조합원은 제외한다)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

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<본항 개정 2018.03.27>

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.

③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
2. 우리사주조합과 이 회사간 체결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 10 조(동등배당)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(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. <본조 개정 2021.03.24>

제 11 조(명의개서대리인)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.

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.

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업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 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.

<본항 개정 2019.03.29>

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.

<본항 개정 2021.03.24>

제 12 조(주주명부 작성·비치) ①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이 회사는 5%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(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)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. <본항 개정 2021.03.24>

제 13 조(기준일) ① (삭제) <2021.03.24>

② 이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

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를 2 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<본항 개정 2021.03.24>

제 3 장 사 채

제 14 조(사채의 발행)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4 조의 2(전환사채의 발행) ① 이 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

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 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1.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2.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3.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·판매·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4.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등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<본항 개정 2023.03.28>
- ②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전환가액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,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 한다. <본항 개정 2021.03.24>

제 15 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① 이 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 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1.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2.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3.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·판매·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4.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등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<본항 개정 2023.03.28>
-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그 발행가액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⑤ (삭제) <2021.03.24>

제 15 조의 2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 다만,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<본조 개정 2021.03.24>

제 16 조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제 11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

<본조 개정 2019.03.29>

제 4 장 주주총회

제 17 조(소집시기)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

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 월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
제 18 조(소집권자)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

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4 조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9 조(소집통지 및 공고)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 <본항 개정 2022.03.28>

제 20 조(소집지)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

제 21 조(의장)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
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4 조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2 조(의장의 질서유지권)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·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23 조(주주의 의결권)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.

제 24 조(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) 이 회사, 이 회사와 자회사,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.

제 25 조(의결권의 불통일행사)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

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26 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7 조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
제 28 조(주주총회의 의사록)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.

제 5 장 이사, 이사회, 감사위원회

제 29 조(이사의 수)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 7 명 이하로 한다. <본항 개정 2018.03.27>

② (삭제) <2018.03.27>

제 30 조(이사의 선임)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 <본항 개정 2018.03.27>

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<본항 개정 2018.03.27>

③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31 조(이사의 임기) ①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

② (삭제) <2018.03.27>

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 32 조(이사의 보선)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이 정관 제 29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본항 개정 2018.03.27>

제 33 조(대표이사 등의 선임)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 약간명의 대표이사, 부사장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.

제 34 조(이사의 직무)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, 임기는 이사 재임 기간으로 한다. 의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. <본항 개정 2018.03.27>

②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전반업무를 통괄한다. <본항 개정 2018.03.27>

③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,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일상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본항 개정 2018.03.27>

제 34 조의 2(삭제)

제 34 조의 3(이사의 보고의무) ① 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<본항 개정 2018.03.27>

제 35 조(삭제) <2018.03.27>

제 36 조(삭제) <2018.03.27>

제 37 조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이를 소집하며, 이사회의 소집은 회일 7 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본항 개정 2022.03.28>

③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 2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. <본항 개정 2018.03.27>

④ (삭제) <2018.03.27>

제 38 조(이사회의 결의방법)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 상법 제397조의 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39 조(이사회의 의사록)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<본항 개정 2018.03.27>

제 39 조의 2(위원회)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투자자문위원회
2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3. 평가보상위원회 <본호 신설 2018.03.27>
4. 감사위원회 <본호 신설 2018.03.27>
5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<본호 신설 2018.03.27>

②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
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7 조, 제 38 조 및 제 39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39 조의 3(감사위원회의 구성)

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.

- ②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 - ④ 감사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 선임한다.
- <본항 신설 2018.03.27>

제 40 조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 <본항 개정 2018.03.27>

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[임원퇴직금지급규정]에 의한다. <본항 개정 2018.03.27>

제 41 조(상담역 및 고문)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상담역 또는 고문을 약간명 위촉할 수 있다.

제 6 장 계 산

제 42 조(사업년도)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43 조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·비치 등)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본항 개정 2018.03.27>

1. 대차대조표
 2. 손익계산서
 3.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
-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.
-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본항 개정 2018.03.27>
- ④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- ⑤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43 조의 2(외부감사인의 선임)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,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 <본조 개정 2019.03.29>

제 44 조(이익금의 처분)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
1. 이익준비금
2. 기타의 법정적립금
3. 배당금

4. 임의적립금

5.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

제 45 조(이익배당)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.

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.

③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월, 6 월 및 9 월말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. <본항 신설 2018.03.27>

④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,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<본항 개정 2023.03.28>

제 46 조(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)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
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.

③ 미지급배당금에는 이자를 부하지 아니한다.

부 칙 <2019. 3. 29.>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9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8 조, 제 11 조, 제 12 조, 제 15 조의 2 및 제 16 조의 규정은 『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』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 <부칙 신설 2019.03.29>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21 년 3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. <부칙 신설 2021.03.24>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22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. <부칙 신설 2022.03.28>

부 칙 <2023. 3. 28.>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3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.

2. (신주 및 사채의 발행에 관한 적용례) 제 9 조 제 2 항, 제 14 조의 2 제 1 항 및 제 15 조 제 1 항에 규정된 신주 및 사채의 각 발행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이 정관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 발행 주식의 수 및 기 발행 사채의 액면총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이 정관 시행 이후 발행되는 신주 및 사채에 대하여 새로이 한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.